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331,819,785	69,954,594
일반회계	1,933,855,845	58,015,675
특별회계	397,963,940	11,938,918
공기업특별회계	153,708,353	4,611,251
상수도사업	70,039,116	2,101,173
하수도사업	83,669,237	2,510,077
기타특별회계	244,255,587	7,327,668
공유재산관리	85,709,937	2,571,298
의료급여기금	9,716,355	291,4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3,061	392
교통사업	51,366,744	1,541,002
철도건설사업	36,163,825	1,084,915
폐기물처리시설	142,405	4,272
도시재정비촉진	1,334,730	40,042
도시개발	5,620,000	168,600
공공시설등 설치	2,123,503	63,705
문화시설건립	35,216,602	1,056,498
도시재생	13,848,425	415,453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3,000,000	9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332,800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15,053,60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 (3) 내부유보금 279,200천원

제 7 조 202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